

검정고시 응시자격

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
1) 응시자격

-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(前)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
-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(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)

2) 응시자격 제한

-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- 초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에 재학 중인 사람(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)
-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
1) 응시자격

-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 -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 -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 -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(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)
- * 이하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함.

2) 응시자격 제한

- 중학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재학 중인 사람(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)
-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
1) 응시자격

-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- *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(예정)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.
- 「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」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 - 종전의 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」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
 -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(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)

2) 응시자격 제한

- 고등학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재학 중인 사람(휴학 중인 사람 포함). 단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
 -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-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
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사람은 제외함.